

제400회 국회
(정기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9)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7)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6)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3)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0)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상정된 안건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 2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9) 2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7) 2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8) 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6) 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3) 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2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2
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2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2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0) 2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2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김윤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

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60)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29)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7)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6)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3)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2)
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0)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 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제부 2차관 소관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관광진흥법 개정안,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2쪽의 조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를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협회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관광협회는 지역별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민간 성격의 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의견은 운영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수정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는 다른 사업자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3쪽에 지역별 관광협회와 지역관광협의회 비교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2항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고령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한 취지에서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령화에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5%에 이르고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첫 번째,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저희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협회라는 것이 민간단체인데 여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개정안 중에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죽 내려가다가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넣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김승원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의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안인데요.

차관님, 혹시 지역별 관광협회하고 지역관광협의회 이 2개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광업자들의 그냥 민간 모임이고요. 지역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지역 단체장이 관광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는 사실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굴러 가는 거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그러면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결성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용 위원 예, 저는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정부 측 안으로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두 번째 것이상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김예지 위원 질문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지 위원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혹시 이게 지금 장애인 활동의 지원,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장애인 활동의 지원을 장애인과 고령자로 바꾸시는 안이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이렇게 다 넣어 버리면 아시다시피……

고령자라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혹시 어떤 경우라고 보시나요? 관광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예지 위원 예.

○전문위원 박희석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차별화는 아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

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이동하는데 그 편의시설 제공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예.

○김예지 위원 거기랑 뭐가 다른 게 제공될 것 같습니까? 그거랑 다른 어떤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노령자들도 이동이라든지에 대해서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 대상을 장애인도 당연히하고 나이가 들거나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지……

○김예지 위원 아니, 저는 대상에 넣으시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요, 이게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씀 주셨다시피 복지부 법안에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관광 지원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 잘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 100%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필요한 서비스 등이 이렇게 되면, 수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인구라고 해서 이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있는가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고령자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이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사실 장애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김예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지금 열린 관광지 조성이나 무장애 관광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동 편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령자라는 말이 없어도 지금 고령자가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편의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령자라는 것, 단순히 인구 비율을 늘린 것도 있지만, 그래야 예산이나 등등 책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등, 여기 47조에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다른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 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편의 등등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훨씬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것을 나누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로 이동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 이동……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동에 관한 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게 있는데 굳이 이동만이라면 고령자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야 되는지를, 큰 차이가 없다면 그게 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 죄송한데요. 이건 정부측에서 자꾸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업 쪽으로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이것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예지 위원 아니, 저는 간사님 말씀을 자른 건 아니고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고령자를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장애인과 함께 넣었을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

의 그러니까 이동편의 말고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감각장애인 또 정신장애인, 다양한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령자를 지원하지 말아라’ 이걸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린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는 그것은 모두를 위한 관광이거든요. 모두를 일컫는 거지요. 이게 영유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노인, 고령인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그냥 모두 이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통과는 되겠지만 저는 이걸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 편성하실 때 장애인, 특히나 이동편의 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 47조에 의해서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다양한 인구가 영입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의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것은 당연히 신경 쓰고요. 장애인에 대한 그것도 당연히 늘어 가고 앞으로 이 분야는 당연히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언가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봐보다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동편의 쪽으로만 몰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고령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동편의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디지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해서 그런 두 가지 면으로 조금 몰릴 텐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 트래블 헬퍼(travel helper)라든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유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연구 등등 진행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다른 타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처에서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1항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고요. 2항도 원안대로 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묶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고령자는 65세부터 고령자라고 하세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지금 그것도 논란이, 83.6세로 지금 저희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금 논의……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개념을 넣으면 그 법적 개념이 바뀌면 그것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그렇겠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상현 의원안입니다.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계정을 통한 사업이나 지원 항목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남북 간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재부와 통일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의 재량사항인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우면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부나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서울시 등 11개 시도에서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자 관련된 개정 사항으로 김승수 의원안, 임오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16쪽의 개정안 주요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인데, 먼저 자료요청주체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수탁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승수 의원안은 여기에 현재 수탁사업자에 추가하여서 관련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는 은행을 추가하고 지급 금지 대상자를 확인하는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관련 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승수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발행사업자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고요. 임오경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양도 제한하는 본인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청자료의 범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구매환급제한자 관련해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그 외 추가적으로 주민번호와 성명 이외에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구매환급제한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표권 구매와 환급에 활용하고는 있는데 구매환급제한자 여부 확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자료요청하는 대상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환급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대행 은행은 단순 지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료요청하는 권한이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처리하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도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에 있어서도 문화체육부와 발행사업자 외에도 본인을 포함해 가지고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요청자료의 종류에 현재는 성명과 주민번호로 해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선수나 외국인 지도자 등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복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5쪽 이병훈 의원안입니다.

26쪽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차액을 남겨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승수 의원이 운동경기 이외에 공연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면서 건전한 관람문화 형성에 본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입장권, 시설입장권 등 다른 분야의 압표 판매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해당 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었고 당시에는 경범죄 처벌법과 같은 일반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27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법 일부개정안, 이게 당시입니다, 이렇게 법에 처벌조항을 넣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대신해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먼저 이상헌 의원님의 남북교류 활성화 근거를 넣는 문제는, 이 문제는 법에 따라서 있는 게 없는 게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보면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내외 체육 대회 행사’라는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생각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이걸 별도로 조항으로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임오경 의원님 발의하신……

○이용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에 좀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6개 지금 진행 중인데 6개를 정부 측에서 듣고 하면 이게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장 김윤덕 그래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관님, 남북 간 교류 이 문제는 넘어가고 쟁점으로 넘어가면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용 위원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면 다음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요,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지요?

○이용 위원 예,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쟁점별로, 법안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 위원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임오경 의원님 것 하시면……

○전문위원 박희석 아니요, 지금 10쪽 이것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10쪽, 하나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이용 위원님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오경 위원 정부 의견에서 수정 검토였는데 왜 신중 검토로 바뀐 건가요? 여기가 지금 붙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신중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의 북한 도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명문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북한의 도발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그러니까 남북……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도발을 여기서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 도발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남북관계를 끊을 겁니까? 통일부나 기재부나 외교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역대 문체부에서 해결을 다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앞장서서.

그러한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차관님 입에서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신 다라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남북관계, 이러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서 문체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관계를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닙니다. 지금도 체육진흥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외 체육행사와 관련 행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남북간의 대치 국면이 심각한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평화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대비하여 남북 체육 교류에 있어서 저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고 지금도 근거가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명문화하자는, 더 명확히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게 제 말씀입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근거를 왜 마련하는지 차관님 아시지요? 근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고 다 그러겠습니까?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법안을 더 강화시키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개정안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 남북교류사업에 기금 사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결국 제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의 하나가 4년간 남북교류 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19년도에는 집행률이 9% 그리고 마지막 작년 22년도에는 집행률이 0.1%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기금 현황에 둘 이유는 없고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수 위원 차관님, 굳이 이것 반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제가 정부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차관님, 여기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해도 크게, 굳이 이것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신 거지요, 정부 입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정부보고 고르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끝끝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또 굳이 구체화할 이유가 있는지……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 저도 굳이 이것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삼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아까도 제가 차관님께도 말씀드린 질의 중의 하나가 이 개정안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 남북 체육교류사업이 중지가 되느냐 안 되냐 했을 때 그것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내외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쟁의 여지를 저희가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재수 위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니까……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국제적인 대회가 갑작스럽게 또 잡힐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명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가서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편의에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가 아니라 그냥 법적 근거 마련해 놓으면 그때 가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일 처리할 때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체부에서 역할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그게 이겁니다. 지금도 근거가 있어서 못 하는 건 아

닌데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용 위원님, 이것은 남북관계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니까……

○이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재수 위원 동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 위원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살펴봤어요.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임오경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런 거예요.

○이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률입니다, 실행률. 그런데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2019년에도 16억, 20년도에 9억…… 다 집행을 한 내역을 보니까 19년도에 9%, 20년도에 0.2%, 21년도에 0.2%, 22년도 작년에는 0.1%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우리가 이 기금을 넣어야 되느냐 생각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을 따지게 되면, 또 저희가 9%밖에 안 댔다고 하는데 그 연도별에 따라서 또 국제대회에 따라서 예산이 그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용 위원 아니, 예산이 1년 할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여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2024년 강원도 청소년올림픽도 지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떻게 아직 계획을 크게 세운 건 아니겠지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더 세워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라면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났을 때, 또 2024년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사안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법안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용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금액을 형성하면 오히려 더 그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싫어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원 중에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기금을 정해 놓으면 그게 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임종성 위원 차관님, 이거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고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현재……

○임종성 위원 개정안을 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종성 위원 그러면 굳이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뭘 신중 검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한다는 것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니까 그게 맞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데.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현행 법률체계에도. 그런데 여기에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것도, 실제 문화예술 진흥 과정에서 남북 간 협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남북 간 영화 교류를 할 때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활동도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법적 요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남북교류에 관한 항 그다음에 영화법에도 남북교류에 관한 항 이게 없이도 남북교류 문제와 관련되어서 남북협력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그다음에 영화, 체육 이런 문체부의 주요한 활동영역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에 체육을 넣어 줌으로써 정합성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에는 규정되어 있고요. 대신 또 관광법이나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들이 법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도 넣고 또 하다 보면 관광도 넣고 이렇게 넣어 가면서 문체부의 문화·관광·체육, 다양한 활동 안에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들이 정책적으로나 예산 지원 근거로나 딱 정해져 있는 게 훨씬 전체적인 법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 더 좋으나 나쁘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상으로 보자면 남북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법률적 체계의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남북교류를 위하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더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소위원장 김윤덕 더 좋으면 하시지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면 현실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냅두자 이것보다는, 현실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건데 더 좋은 거라면 더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용 위원님 어떠세요? 문화 그다음에 영화……

○이용 위원 아니, 간사님,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다는데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정부 측 수용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 위원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확대시킬 조항이 아니고 법률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과 교류에 관한 항을 문화 그다음에 영화, 체육 이렇게 해서 정합성을 갖춰주는 차원에서 이상헌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수용해 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조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별로로 한다는 것이 뭔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지요, 사실은.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북 간이 경색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법은 그 전에 상정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 그다음에 영화·체육·관광,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의 법적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시기적으로 약간 연동되어 있는 것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정부 측에게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자 이런 거지요. 동의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용한 걸로 하고 또 여러 여야 위원님도 존중해 주셔서 이상헌 의원님 안은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이것은 지방체육회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지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체계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체계상으로 무엇이 어려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지방재정 부담이 문제라고 아까 앞서서도 차관님께서 다른 법안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 재정자립이 문제인 거예요. 조례로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 보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조례로 갔을 때와 대통령령으로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대통령령으로 가면 기준 자체가 일관되겠지요, 일정하겠지요.

○임오경 위원 조례로 가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조례로 가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요.

○임오경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지방 이양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또한 지금 얘기하고 흡사한 거예요. 지방에다가 다 이양을 해 주게 되면 지방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아니, 지방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실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조례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일원화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저희가 범정부인화해서 민선 체제로 2020년도 도입을 했는데 저 또한 조례보다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해서 문체부 시행령 안전망 구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자기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넣는데 그거를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의 조정·재량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부처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못 해 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로 놔두게 되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정 법인으로 해 가지고 민선 체제로 바꿔 놔는데, 이거 대한체육회에 계실 때 바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고 조례로 해 놔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지원을 못 받고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상황을 말씀한 거고 저는 그

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이 시스템상으로 지자체가 자기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하고 조금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지자체 사무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두고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좀 도와 달라고 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정부의 간섭이라는 식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보통 이거 하실 때 지자체 입장에 관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많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김예지 위원 그래도 혹시 소수의 지자체라도 이걸 원하는 데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희석 원하는 곳은 저희 쪽에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반대하는 곳은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울산시 등 11개 시도입니다.

○김예지 위원 저도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고……

○전문위원 박희석 반대하는 겁니다.

○김예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가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령이 되건 조례가 되건 지원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그러면 그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걸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이 법안에 대한 쟁점은 시·도체육회에서 반대한다는 건 두 번째로 하고요. 일단 정부 측 의견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해서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용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또 있잖아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전문위원 박희석 아닙니다. 지금은……

○임종성 위원 지자체마다 다 다를 거야.

○전문위원 박희석 현행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범퍼(bumper)가 있어서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부 의견이고, 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기면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하니 대령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어찌됐건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부담스러우니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반대하는 거지 우리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

차관님,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범주 안에, 정부의 범주 안에는 지방체육의 진흥도 과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체육을 진흥하는 과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의 위상과 역할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체육회장이 민선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지방 단체장들과 견해가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체육회장이 인선되었을 때 매우 의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에 지원하지 않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선택적 자기 입맛에 맞게 지원해 버리는 폐단이 있으니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런 현실적 폐단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것 또한 지방체육진흥에 국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제가 임오경 의원님께서 왜 이걸 냈는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체육회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문제가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시스템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노력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시스템에 맞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정부가 해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2월 3일 날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박정 의원님하고 이용 의원이 발의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때도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놔기 때문에, 이 법안도 잘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야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반대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체육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은 적극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 왜 반대하겠어요? 예산의 문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주요 팩트는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지금 지자체들이 반대하

는 것, 왜 반대하는가 알고 있어요. 체육회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하고 싶은 만큼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는 연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지요, 민선으로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법안 발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안도 실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해 놓게 된다면 지자체 17개 시·도체육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닙니다.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상황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임오경 위원 그 현장에 대해서 봐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자체가 자기 내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체계상 조례로 하는 게 맞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일단 차관님 입장이 명료하니까 임종성 위원님이나 전재수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재수 위원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임종성 위원 그냥 넘어가요.

○전재수 위원 논의를 좀 했으니까 보류시켜 놓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제4항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오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4항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수탁사업자의 의무 환급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저희 의견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인 거지요? 스포츠토토 건이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5항·6항입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수정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저는 수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물어볼 게, 제가 지금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경기단체라고 했는데 이 경기단체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경기단체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경기단체라는 게 종목단체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장관님도 넣고 장들을 여기다 넣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경기단체 했을 때 저도 이게 의문점이 좀 남아서, 경기단체 하면 종목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종목단체가, 일단 다섯 종목이 현재 스포츠토트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면 그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단체를 우리가 대한체육회부터 스포츠토트에 참여하는 종목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체육회를 배제하고 할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수탁이나 책임자도 봤을 때 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장관님까지도. 그러면 경기단체를 했을 때 대한체육회장은 지금 빠지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체육국장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체육국장 최보근입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단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대한체육회는 포함되지 않고요, 스포츠토토 관련되는 종목단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소프트볼, 야구, 농구, 배구 그다음에 프로골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장은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런데 감독하는 지위 그 위치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를 의

미하는 거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장관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장관이 다 포함됩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여기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 단체의 임직원 등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여기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의 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 위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윤덕 포함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30조 2항 1호·2호·3호를 볼 때 ‘발행사업자·수탁사업자’ 여기도 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할 때 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단체, 종목단체 회장들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기단체의 수장인 대한체육회의 장이 안 들어가는 게……

대한체육회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물론 여기에는 프로축구연맹도 있고 프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단체는 사실 대한체육회 산하는 아니거든요.

○임오경 위원 그래도 저희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프로단체가 아닌 일반 대한축구협회나 한국농구연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발의안의 내용이 다소 장황한 측면이 있어서 저도 수정을 하신다고 하기에 김승수 의원님의 발의 취지도 살리고 또한 법안 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의안 4항의 내용을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단체장 등 본인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로 수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경기……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위원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차관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잘 좀 들어 주세요.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장황하니까 이것을 좀 축소시켜서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단체장 등 본인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로 수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황하게 넣는 것보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식별번호로 하게 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가니까요, 그 안에도.

그러면 저희가 수정안을 장황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단체장 등’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지금 현재 수정안은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오경 위원 예, 그것을 고유식별번호로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고유식별번호는 법적 개념이 정확히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예,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면 고유식별번호가 뭐라는 것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고유식별번호가 법적으로 딱 있습니다. 그 안에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그런데 고유식별번호라는 표현도 괜찮은데 사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법 그리고 여권법,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유식별정보로 들어가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고유식별번호로 하면 거기에 여권번호하고 또 운전면허번호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아니요, 그중 하나만 저희가 하면 되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너무 범위가 넓어서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만 해도 충분히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정안을 낸 거였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고유식별번호 그쪽에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지만 너무 장황하니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단체장 등 본인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과 그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위원장 김윤덕 주민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0쪽의 임오경 의원안으로 제안하신 개정안 4항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지금 수정의견을 주신 것에 있어서 이게 좀 장황하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넣자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지요, 차관님?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서는 현재 수정안 나온 것에 대해 정리를 하는데요. 그 정리 내용은 별다른 게 없어요. 다만 아까 정리한 대로 하면 경기단체 이 개념에서 대한체육회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동의가 되면 임오경 의원님 안으로 정리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 정리된 문안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체육회장은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고유식별번호 폐기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대한체육회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만 논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임오경 위원님의 개인식별번호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이 됐다고요. 수용이 됐어요. 그건 끝났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나 감독 지위에 있는 단체까지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보류하셨다가 현재 법체계상 맞는지 제가 확인을 바로 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지요?

임오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국인·외국인 그건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가 들어가는지 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그것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문체부 측 답변받는 것을 전제로 일단 이견 넘어가고 다음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명확하게 논의가 안 된 게 김승수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김승수 의원안의 자료 요청 주체에 지급 금지 은행을 포함하는 것하고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3쪽 수정의견의 5항이, 길게 써 있는 부분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김승수 의원안의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하는 것 그 내용을 정리한 게 5항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김승수 의원안은 자료 요청 주체에다가 넣어 가지고 자료 요청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요청을 할 주체는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면 충분하니, 은행에서 자료 요청까지 하는 것은 개인정보 측면에서 맞지 않으니 거기서 요청해서 받은 것 확인만 해라 그런 취지로 정리된 게 5항입니다.

그러니까 5항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그 취지는 김승수 의원안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또 정부에서 얘기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 반영해서 문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건,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 임오경 의원님 안에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견해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희석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5항이 들어가 있는 취지가, 혹시 5항을 다 빼는 걸로 오해를 하실까 봐…… 23쪽 수정의견 5항의 취지는 김승수 의원안의 자료 요청 주체에 위탁 업무를 하는 은행을 넣으면서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하는 근거만 넣은 것이니 그것은 살리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료 요청 대상에 넣는 것은 조금 과하고 요청되어서 받은 자료를 은행에서는 확인할 때만 써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쪽 하단에 있는 5항에도 보면 수탁사업자는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만 문안 정리가 된 겁니다.

나머지 것은 조금 전에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도 의견 준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위원님 별다른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고요.

다시 이병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이것은 저희도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결과와 같이 개별법에 넣기보다는 종합법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적 취지는 동의가 되지만 법적 체계상 일괄적으로 경범죄 관련 법체계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는데요, 문체부 국장님께서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 기다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차라리 다음 법안을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좀 미루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8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자료 30쪽, 3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이외에 위원의 자격 관련해서 현재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라고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을 ‘사행산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관련 분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박 중독의 예방·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에 반영해서 현장의 도박 중독 예방·치유 상담 경험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예방치유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센터가 2곳이 있고 지역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13곳 등 총 15곳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17개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4곳에 총 21개의 센터를 설치해서 직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는 불법 도박 수요와 상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역센터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상담 수요나 센터 확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난 10월에 관련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용 위원의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문 상담기관이 인지도가 낮고 이용 실적도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치유 상담은 몇 달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의 접근성이나 상담원과의 꾸준한 상담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1개 지역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연간 약 172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2개 직영 센터에서 21개의 센터로 직영 센터가 확장됨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확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정부에서는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범위를 순매출액의 0.5%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하한을 순매출액의 0.35%로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비율을 0.35% 이상으로 하한을 정할 경우에는 22년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45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정 의견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정부에서 수정 의견을 조문으로 준비를 해 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부하고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배포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는 데요, 사행성감독위원회 용호성 사무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용호성 처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용호성 사감 위 용호성 사무처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 2항의 2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격 기준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 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을 할 경우에 애초에 의도되었던 범안의 개정 의도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정부 쪽의 수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현행은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사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임오경 의원님께서 만드신 안에서는 예방치유원이 17개 시도 플러스 100만 이상 대도시 4개 지역 해서 총 21개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의 수정 의견은 지난

해 연구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결과 현재는 이게 예방치유원에만 부담이 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부담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 주체에 관한 부분을 둘로 이원화를 해서 위원장—여기 사감위원장을 지칭하는 겁니다.—또는 17개 시도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장, 2개의 주체가 다 같이 도박문제지역센터에 관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 변경 사항인데요. 하나는 설립 주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관련된 부처 의견을 한 결과 기재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에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이것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관련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저희가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13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 12개 지역은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관련 학과,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1개 지역에는 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조 2항을……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일단 하나씩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자격 요건……

○전문위원 박희석 위원의 자격 요건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자격 요건 문제하고 그다음에 센터 설치 문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재부에서 김서중 처장님 와 계세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예,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참고로 기재부에서 김서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님 와 계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한정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임종성 위원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말씀하세요.

○임종성 위원 강제 조항이 좀 부담 간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박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도박문제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해야 한다’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밑의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박문제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의 14조 7항 같은 경우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또 다른 위원님.

○이용 위원 처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상담 수요 증가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해 보인다고라고 했을 때 도박 중독 유병률은 5.3% 그다음에 상담기관 인지도는 19.3%, 이용률은 2.2%라고 얘기하는데 2.2%라면 혹시 인원수로 이걸 환산할 수 있을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상담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건수 기준이 있고 인원 기준이 있는데요. 2019년에 인원수 기준으로 9563명이 상담을 받았고 2021년에는 1만 3152

명이 받았습니다. 매년 대략 한 12% 내외의 인원이 계속 상담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건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9년에 4만 134건에서 2021년에 5만 1999건으로 역시 13% 정도씩 매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대략 2주 정도를 대기 해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걸 보냐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상담 수요에 관한 부분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해 놓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위원 그런데 임오경 의원님께서 이것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하는 이유가 뭘니까, 이렇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 전체를 대표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조정안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행성감독위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여기 기재부 와 계시니까 기재부, 문체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섞어서 말하지 말고.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입장이 뭘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저희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는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센터를 지금보다 확장해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기재부에서 나오신 김서중 처장님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려고 나와 계신 거지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아니요, 저는 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타공공기관인데 기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서 아마 이걸 조정을 하자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참고로 제가 오기 직전에 기재부 공공정책혁신심의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의 시작하기 30분 정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지역에서 강행규정화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을 전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도박문제……

○전재수 위원 정부에서 이런 것 안 하면 뭐 합니까?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잠깐만……

말씀하세요, 일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 의견까지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당초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도박 중독,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해결되어야 하는 그 정책적 측면에서 입장이 뭔지가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다음에 또 다른 접근, 공공기관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잣대가 있는 거지요. 이 두 개를 놓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야지 그저 그냥 기재부 기존 예산 잣대 놓고……

그렇게 답변 들은 것 이외에 지금 다른 답변 들은 거 있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또 한 가지 의견은 당초에 문체부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저희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7개 합법 사업자들의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센터 설치를 늘릴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문체부와 기재부하고 농림부에서 공히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7개 합법 기관들은 내국인 카지노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륜·경정, 토토, 마사회, 소싸움 그렇게……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 경정, 복권위원회 이런 돈 많은 데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전재수 위원 돈 많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박희석 참고로 37쪽에 보시면 내용

이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니,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양산한 피해자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당연히 해야지.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정부 입장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인데 약간 논쟁이 있었습시다.

우리 문체부도 주무 관청인데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다른 것보다도 이걸 지방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제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개별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더 유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왜 시켜요? 제가 한 마디……

○소위원장 김윤덕 한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종성 위원 피해자들의 상담 신청이나 이런 게 매년 20~30% 증가하지요, 그렇지요?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7개 업체가 어찌 됐든 사행성으로 인해 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진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안 띠게 되면……

아니, 업체 부담 가는 것을 왜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도박으로, 사행성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고 그것의 일부를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정도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저는 일단 반대할 의견은 아니고요. 7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조금, 지금 상황이 이거를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게 아닌가 싶은 게 예를 들어 GKL이라든지 경륜·경정 그런 것 등등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법안 개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상황이, 한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에 이제 22대 국

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게, 이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 위원 정부 측보다는 위원장님께 조금 건의드릴 말씀은요 아까도 2차관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문보다는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기 순서가 2주는 걸려야 된다고 했지요, 아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12.8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용 위원 2주는 걸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몇 개소를 더 늘렸을 때 2주 걸리지 않고 충분히 예방·치유를 할 수 있는, 바로바로 예방·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충족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문체부 아니면 사행위 처장님께서 예방·치유를 매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몇 개소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가지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정보를.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일단 이용 위원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9년에 우리나라 불법 도박의 총매출액은 약 82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 총 매출액 22조 원의 대략 4배 수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고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임오경 위원 또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1년도 1분기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2020년 동기 대비해서 도박문제 상담 신청이 30% 증가한 것 맞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치유 서비스 인원이 20% 증가한 것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살 사고 비율이 2.2배, 2.1배나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 도박문제는 저는 지금 정부 의견 수정 수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문제 상담 신청이 30% 증가하고 또 치유 서비스 인원이 20% 증가하고 또 자살사고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 결과보고를 보면서도 방치할 것인지, 저는 이것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의견 수정 수용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라면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까 문체부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 이것 지금 생명이 있어서도 저희가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우리 문체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두 곳이 직영 센터고 13개 지역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조사업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직영 센터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규모 됩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직영 센터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 센터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연 5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큰 기관의 경우에는 8억에서 8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직영 센터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현재 2개에서 21개로 직영을 전환하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전체를 직영화하는 안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게 이걸 위탁을 주는 형태의 안을 현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 법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러니까 당초에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은 직영으로 하는 걸 전제로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1개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현재 위탁사업자 문제로 할 경우에 지금 예산 비교를 했을 때 172억이 더 든다는 산출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172억은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7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리고 사행성감독위원회 말은 현재 이걸 더 든다는 얘기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봐 봐요. 현재 센터 운영에 따른 2개의 직영과 13개의 보조사업자로 운영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지금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총 예산이 현재 8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직영 2개 얼마, 13개 보조사업자 얼마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직영 예산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82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21개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얼마예요? 172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직영 2개 예산 알아보기로 했어요. 82억 보텐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내가 볼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한 것을 보면 8개 지역센터 설치를 추가할 경우에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세요.

직영 2개 얼마입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27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직영 2개에 27억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110억이네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110억이잖아요. 직영에 27억 그다음에 13개 보조가 82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렇지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82억을 13개로 나누면 1개당 산출이 되는 거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것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기관, 큰 기관이 있기 때문에 5억에서 8억 정도……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다음에 직영은 27억이니까 2개로 나누면 13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172억이 설치된다고…… 172억이라고 하는 것은 27억 빼고 나면 불과 몇십억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172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110억의 돈을 직영 2개에 27억 그다음에 13개 보조사업자로 해서 82억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만 더 투자하면 21개 직영센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돈 60억 아끼자고 지금 직영 센터 못 하겠다는 겁니까, 도박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저희로서도 현재 예산에서 68억 정도가 추가되면 전국의 21개 지역에 직영 센터를 운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문체부차관님, 여기 37쪽 보면 2022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내역이 있는데 강원랜드, 마사회, 복권위원회 이런 데에서 67억 더 내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글썄요, 지금 67억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67억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확정하고 간다는 게 물론 중요성은 인지는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좀 따져보고 필요하면 만 들어라 이렇게 틀을 만들고 가시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임의규정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법안 논의할 때 예를 들면 2개의 직영 센터잖아요.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21개 해서 정책적으로 얘기만 하고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으면 계속 2개로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거는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사항을 받아 보시고 또 체크해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김윤덕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임종성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여기에 합법적인 게 1년 수익이 22조, 이 정도 돈을 벌어들인데 이 조그마한 돈, 어떻게 보면 그 돈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체크하면 된는데 이 법안이 지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 별로 관심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번만 지나가면 이제 끝난다 그 생각 아니세요, 차관님?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끝나고 나면 이게 생점화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행성 문제가 다시 사회 이슈화됐을 때 그때 다시 재논의될는지 몰라도 이 법안 하나 검토했을 때는 위원들이 신중하게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요.

지나고 나면 이 법안 가지고 다시 들춰내서 논의한다?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 많은 법안들을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보류해서라도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든 아니면 이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든 해 가지고라도 다음에 통과시키는 한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말씀하세요.

○이용 위원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사행위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명확하

게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예방·치유하는 데 있어서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이러 해서 몇 개소가 더 필요하고 몇 년도에는 몇 개소가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안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추가 소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접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재 강릉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서지역, 그러니까 원주나 춘천 쪽에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경북이라든가 경남 같은 경우는 도가 옆으로 길거나 아래 위로 길어서……

○**이용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고, 좀 보류를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렇게 하자고 해도 문제는 저기가 먼저 원하고 여기가 먼저 원하고, 그러면 하자고 해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의 탄력에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러니까 저희는 임의규정으로 가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21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처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영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하고요 13개 보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하고, 제가 저희 지역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사업 성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지역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또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주로 나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전문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디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직영 센터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 조금 늘리는 것을 해야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현재 직영 센터 두 곳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직영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지역 같은 경우는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라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 곳만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 지역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현재 쟁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측으로 보자면 직영 센터나 그다음에 수탁사업자가 하나 사업 성과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사람 늘려 주고 예산 좀 더 줘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예산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수탁보조자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성이 떨어지고 강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니 직영 센터를 만들어서 야무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줘야 된다. 그런데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매년 28억씩 주고 있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계속 도박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되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하루빨리 잡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에 대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처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인데, 지금?

답변해 보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질 높게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만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부 내에서 조정안으로서 현재와 같은 임의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영보다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자치

단체에 역할을 부여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타협안으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자원을 무한정 늘리자는 견해가 아니고 이 법안은 21개 직영 센터를 운영하라고 딱 적시되어 있는 안입니다.

일단 다른 의견 없으면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윤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될 의견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용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다 좋은데요, 저희가 한 가지, 임의규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임오경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을 건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은 곳에 이걸 뒀다 되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마사회가 됐든 경륜장이 됐든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법안 내신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요.

○임오경 위원 저는 정부에서 낸 임의규정 안에서 14조 7항을 ‘도박문제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만 변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는 수정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감위에서 나오셨는데, 건전화 평가 결과표는 있나요?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4조의2 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14조의2 2항에 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2쪽 하단을 보시면 14조의2에 대한 임오경 위원님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00분의 5 이하, 0.5% 이하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1만분의 35,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0.35에서 0.5로 해서 하한선을 0.35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와 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사업자들 대부분의 의견이 부담금이 너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서 저희가 건전화 평가를 할 때 건전화 평가를 유도하는 하나의 유인 수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쪽 수정의견 2항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때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1만분의 35—그러니까 0.35%—이하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자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건전화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일 수 있어서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건전화 평가는 저희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의 건전화 평가 결과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건전화 평가지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총량을 유지했는가에 관해서 10점씩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것 중에서는 건전화 홍보, 그러니까 도박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나쁜 결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전자카드라고 해서 실명만으로 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 이용에 관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박 중독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건전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도해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단서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에서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정리해 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복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김윤덕 그냥 서서 답변해 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안녕하십니까,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서중입니다.

우선 먼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인데요. 결국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자는 목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이 가장 작은 복권이 제일 많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감면할 때 건전화 평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전화 평가를 누가 잘 받는가 보면 결국 공단입니다.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이런 데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고요. 소싸움이라든가 나머지 사행산업들은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건전화 평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는데 유병률 조사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자는 계속 카지노, 경마 쪽에서 많이 만들어 내는데 그에 대한 부담을 복권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할 거면 건전화 평가도 물론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병률 조사도 어차피 사감위가 하니까 건전화 평가나 유병률 조사 결과 우수한 사행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직과도 관련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는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이 21년 결산 기준으로 거의 265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치원에. 그리고 22년의 경우 지금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예치원 예산이 220억 원 되는데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0.35%가 기본인데 0.35%도 사실 그걸 다 쓰지 못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하한을 0.35로 하면 이게 결국은 좀 더 부담률을 올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딱히 드릴 의견은 아니고 다시 한번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배부한 자료 2쪽 임오경 의원안 14조의 2 1항에 보면 하한을 0.35%, 1만 분의 35 이상으로 추가로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수정 의견은 동일하게 하한은 35 이상으로 하되 3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나 건전화 평가 결과,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해서 부담금 부과 비율을 다르게 하면서도 이때 1만분의 35 이하의 하한을 개정안에 있는 것 예외로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의견이고요.

지금 복권위원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거기에 더해서 사행산업별로 도박 중독이 되고 하는 유병률이 다르니 그 평가 결과를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저도 지금 복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유병률 조사하는 자구가 한 마디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감위에서 0.35%를 낮춰 달라고 하는데 사감위 의견은 어떤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외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도 장치가 있어야만 건전화 평가에서 저희

가 사업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일정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용 위원님이나 김예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예지 위원 기재부 과장님이신가요, 말씀하신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달리 정하면…… 지금 예산이 쌓여 있습니까, 다 못 쓰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산 적립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40억 내외 정도 예산을 2019년까지는 계속 누적으로 적립해 온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립했던 이유는 2020년, 21년과 같은……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수 위원 예산집행을 제대로 다 못 해 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잔여 예산 개념이 아니고요. 부담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저희가 적립을 하고 그중에 다시 집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재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님,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복권위원회는 유병률이 적으니까 부담금을 줄여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아닙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전화 평가 결과, 총량 준수 여부 그다음에 지방세 이것에 따라서 감면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감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본취지가.

○전재수 위원 그것도 반영을 해 달라, 그러면 복권위원회는 많이 줄겠네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아니, 어차피 감면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40% 내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 그래도 줄겠지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예, 좀 줄 거라 봅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면 복권위원회가 줄면 어디가 더 늘니까, 준 만큼?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아니, 어디가 따로 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순매출의 0.35가 기본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100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걸 감면을 받으면 한 이삼십억 정도 줄 것으로 보고요. 그만큼 저희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취약계층 복지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이걸 같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복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새로운 얘기여서요 그 취지에 대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또 문체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재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의원 누구를 설득하든지 설명을 잘하셔서 별도로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 복권위원회 이 부분은 법안에 포함된 내용도 아닌데 논의를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사실 어제는 ‘등’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을 넣자는 건데 그 ‘등’이 사실은 그런 개념이다, 매출 총량이라든가 유병률도 나중에 같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에 남기려고 오늘 회의에 일부러 나온 거고요.

○소위원장 김윤덕 복권위원회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예.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현재 복권위원회 측에서 평가지표로 유병률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전재수 위원님 말처럼 현재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논의를 유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는 그걸 동의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결정을 하시기에 도움되시도록 제가 잠깐 보충 의견을 드리면 어제 복권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3쪽 오른쪽 수정 의견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이라고 ‘등’자 하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유병률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전화 평가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응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화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건전화 평가에서는 유병률 부분에 관한 비중이라든가 고려를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권위원회에서 의견 내시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 1분기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어쨌든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현재 법규 내에서 ‘등’ 자를 매겨서 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재수 위원님 말처럼 다음 기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복권위원회 김서중 처장님은 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서중 예,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현재 임오경 의원님 안에 약간 수정해야 되는 정부 측 의견 말씀이 있었고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없으면 또 넘어가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위원의 구성 문제 그다음에 지역센터 문제 그리고 치유부담금 문제 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직영 센터 만드는 그 문제만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성안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재수 위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자

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예, ‘해야 한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1개 직영 센터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 성안해 주시라고요.

○임오경 위원 정부의 임의수정안 마지막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만 하자라는 거예요. 직영을 21개로 저희가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것은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로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가 지금 직영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센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항상 법안이라는 게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누가 만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사감위에서 철저히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3년째 똑같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전재수 위원 차관님, 이것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별도의 페널티 조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의무조항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페널티가 없는데 안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그런데 법률에 ‘하여야 한다’하면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전재수 위원 아니, 법률에 ‘하여야 한다’ 해 놓고 페널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안 지키는 것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만든 법인데 그것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의무조항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이 늘어나니까, 물론 당사자는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임오경 위원 차관님, 지금까지 보고받았는데

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니깐요.

○이용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미비점이 있다면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미비점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시지요. 나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 좀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직영 센터를 만들 경우에 그 예산의 근거는 국가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정부가 지원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7개의, 뭐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사업자들의 부담금으로……

○소위원장 김윤덕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부담금도 어차피 공공에서 관리하는 재원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세금이나 부담금이나의 문제지.

○소위원장 김윤덕 기재부가 직접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세입에서. 일단 재원은 단체에서 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적립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사행산업처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런데 적립할 때 260억 남았다고 그랬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현재 26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적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아까 보니까 21개 센터를 직영해야 된다고 해도 60억 쓸 수 있는 재원은 거기에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단년도로는 가능한데 이게 지속 가능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90억 이상 결손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약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윤덕 지난해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코로나 시기 때 생긴 것 말고 지금 회복세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재원이 없다가 아니라 재원이 백번 양보해도 코로나 국면에서 90억 손실금 난 것 감안해 보면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재원이 안정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행성감독처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양보한다면 3개년 계획 잡으면 현재 21개 직영 센터를 목표로 했을 때 15개 정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현재 이미 13개 지역이 있고요. 8개만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건 지금 현재 민간업자로 수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것을 직영 센터로 하라는 거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그런데 직영 센터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의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고, 아울러서 여기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을 또 순환배치해야 되는 이런 것에 따른 개인적인 고충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영 센터라는 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의 우려는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진짜 부처 의견대로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문체부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면서도 위원님들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절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지역 21개소에 전체 설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상임위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사감위 내에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용 위원** 보고를 받아 보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이 강제조항으로 다시 한 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문체부 차관님, 계획안 사행성감독위원회하고 정리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저희가 법적으로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원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연말까지라고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예산 부담금 관련해서 용역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발맞춰서 용역 결과보고 그리고 센터 문제 두 개 동시에 보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아울러서 저희가 어차피 내후년도의 예산안을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해서 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예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예지 위원**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지역센터 확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와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보고 및 그 대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법안 문구 자체로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전

문위원님께서 문구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거기에 기초해서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논의하신 것 결론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배부한 자료 기준으로 다시 1쪽의 위원의 자격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수정의견대로 관광, 정보기술, 도박 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하는 전문분야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설치의 정부안대로 우선 하고 내년에 부담금이나 센터 확충 계획을 준비되는 대로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의2 예방치유부담금 부과·징수도 정부안으로 하는데 3쪽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유병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새로 나온 얘기니까 지금 그것을 반영하지는 말자……

○**임오경 위원**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니까 그러면 반영을 안 하려면 ‘등’을 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영하는……

○**임오경 위원** 아니, ‘등’을 그대로 두어야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넣는 것으로?

○**임오경 위원**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등’을 넣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전화 평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전문위원 박희석** 내년에 그러면 같이 보고하시는 것으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옹호성** 예.

○**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등’이 들어간 정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된 내용 다 공유되었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4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포함 사항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은퇴선수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활용,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배치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질적 제고로 도모하고 은퇴선수를 활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수용이에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정부 의견은 수용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정부 수용이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안입니다.

4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현행법은 94년~99년까지 사이에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

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이후에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병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 사문화된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조성비 예치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해서 병설 골프장은 경기도에 21개, 제주도 11개소, 강원도 5개소 등 4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혹시 정부 측에서 더 부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예지 위원님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김예지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11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희석 11항 같은 법 개정안,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50쪽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이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요가·필라테스에 대해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지적이 있었고, 관련 피해 구제접수가 매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요가·필라테스업을 포함시켜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정부는 수용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볼링장 다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를 새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규제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 이용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차관님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탁구장이나 또는 실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업으로 바뀐다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부터 소방점검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떤 종사업을 원활히 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지금 인공암벽장업이 체육시설업으로 법안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체육시설업으로 바뀌 냈는데요. 맞지요, 체육시설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시국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냈고 아시다시피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은 서비스업, 자유업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그 2년 사이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을 봤을 때는 체육시설업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전체를 일원화시켜서 해야지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몇 종목만 또 체육시설업으로 바뀌 준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이 두 종목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부에서 반대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두 업, 체육시설업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체육시설업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용 위원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를 은퇴하고 나서 어떤 관련 종목,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오픈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정식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가지고 안전점검, 소방점검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쉽게 아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게 바로 걸림돌이 되고 발목을 잡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종목은 시설업에 들어가고 또 어떤 종목은 시설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체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발목을 잡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요가업하고 필라테스업은 그러면 체육시설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안 하고 필요하면 자유롭게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지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안 하면.

○임오경 위원 그러면 홍익표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체육시설업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업으로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런 얘가지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 외적인 사업도 저희가 일원화를 시켜서 이런 피해를 앞으로…… 저희가 팬데믹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가업하고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체육시설로 받아 주는 게 어떤 큰 제도적인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거지요, 요건도 갖춰야 되고 신고도 하고.

예를 들면 탁구장, 롤스장, 볼링장 이런 것은 체육시설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오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신고를 하게 되면 요건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여러 가지 설비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학원의 경우도 실업수나 그다음에 학원 정원 그리고 교사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습소, 학원 이런 식으로—이것 실기학원 말씀드리는데요—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부분이나 안 보신 부분은 사실 방역 조치나 아니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더 실효적으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사실 강제하고 규제하는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습 목적으로 1인 정도 하고 많아야 2인 수업 하시는 그런 스튜디오 오픈으로 운영하시는 요가 선생님들이나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사실 이것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크게 그분들을 위한 법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말씀 주셨다시피 헬스장이나 이런 곳은 체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 사례가 많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통계가 나오거나 실태조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부처에서 감염병이나 그런 특별 상황 등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

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헬스장 같은 경우 왜 체육시설업으로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상당히 컸던 겁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경우는 자유 서비스업,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도 지금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아무런 대안을 저희한테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헬스장도 서비스업으로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체육시설업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 19 2년 반 동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떤 때는 서비스업으로 가고 또 어떤 때는 체육이라고 해서 스포츠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지금 양쪽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서비스업이나 자유업이라고 생각하면 스포츠로 받아 주지 마셔야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태조사 없이 이것에 대한 정의를 안 내려 주시니까 손해 보는 사람은 손해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이게 신고업종이 되지 않더라도, 자유업종이어도 사실은 시설물 안전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조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업종 일지라도 표준분류표상 이게 체육시설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기금 융자라든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꼭 신고업종이 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단체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이런 신고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업종 중에 어떤 것은 왜 신고고 이것은 자유냐, 이 근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가나 필라테스 그것을 서비스업종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포츠와 관련되어서 용자랑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헬스장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종으로, 자유업종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무조건 여기는 체육업으로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용자들 뭐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헬스장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업에서 자유업종으로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양쪽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것을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경우도 자유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한다면 저는 체육업으로 하지 말고 다 열어 주자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헬스업종이 신고업종이 된 이유는 소비자 보호라든가 안전조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고업종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볼……

○임오경 위원 제가 여기에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헬스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종목이 등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스장 안에 요가, 필라테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헬스장 등록을 체육시설업으로 처음에 하면서 그 안에서 헬스, 필라테스를 합니다. 그 모든 종목이 다 영업제한을 받았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부당한 거지요.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만 서비스업으로 받았을 때는 운영을 하게 했는데 헬스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섯 종목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그냥 헬스장 하나로만 봤던 거지요. 그래서 이 피해 업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풀어 줘야 될 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이번에 두 개 업종만 이렇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업종에 들어왔을 때 혜택도 있지만 또 규제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김예지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혹시 평가 관련된……

○소위원장 김윤덕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예지 위원 넓이와 관련된 제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넓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어야 체육시설로 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시설기준이 있는데요.

○김예지 위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하면 보통 시설이 큰 데는 체육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1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 규모가 작은, 약간 학원하고 교습소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임오경 위원 헬스장은 무조건 체육시설업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하고 상관없이.

○김예지 위원 기준, 규모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 헬스장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나요? 10평짜리 헬스장 신고를 해도 되고 100평짜리를 해도 신고인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규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업에는 종목으로 나뉘져 있었어요. 제가 작년 제작년에 이걸 파악할 때 종목으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평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으로 나뉘져 있어서 체육시설업 종목 딱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그 제안서를 다 드렸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 요가업과 필라테

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나머지 헬스장,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또한 양쪽으로 다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아주 많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체육시설업으로 굳이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체육시설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거쳐야 되니까 더 복잡하다, 안 넣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역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설업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까다롭게 한 게 있다면 풀어 줘야 맞는 거잖아요. 필라테스나 요가가 법적 체제로 들어오는 건, 시설업으로 넣는 건 반대한다면 역으로 또 다른 안을 내놓아야 돼요. 현재 체육시설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업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와야 형평성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그것 체육국장이 고민해서 별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업이라고 규정해서 딱딱 두 부 자르듯이 잘라지면 편하겠는데 헬스장 안에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별문제가 안 되다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 체육시설업은 금지시켜 버리고 서비스업은 풀어 주다 보니 요가·필라테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는 혜택을 보는 꼴의 결과가 됐고 헬스장 안에 있는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는 헬스장처럼 취급받아 버리는 효과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디테일함을 추구했더라면 얼마든지 보완 가능한 거였던 말이지요. 법적·제도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아닌, 헬스장 내에 있었던 그런 필라테스라든가 요가가 피해 봤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체육시설업이 가진

폐단과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책을 정리해서 또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래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수용곤란 입장, 바뀐 것에 대한 일관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해당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정 의결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은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53쪽 이하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축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같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IOC 그리고 북한 당국에 남북의 공동개최 그다음에 공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또 문화예술 교류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 공동지원단 구성 등이 성사될 경우에 남북 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현재의 남북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은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어떤 점이 적절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전면 부정해 버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남북 공동 개최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일단 본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북한은 2022년 한 해만 60여 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앞서 차관님도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한 건가요, 거기에서도 미사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만을 가지고 법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미사일 발사를 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듣고 또 차관님한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를 할 때는…… 2024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유럽권 최초, 아시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의안 식이지만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이에요. 그 축구 결의안, 평화올림픽 구현을 이것은……

올림픽에 대한 평화는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결의안 안에 몇 가지…… 공동 개최를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노력해서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결의안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자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얼마 전에 예산소위 하면서도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는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 가지 남북결의대회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로 올림픽을 구현을 하자 그런 의미

도 담겨 있었는데 지금 이 결의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 공동 응원이나 또 공동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담고는 있지만 이것은 노력을 일단 해 보셔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셔서 안 된다면 그냥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 위원 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그때 2018년도 남북 공동 개최했을 때 그 현장에서 당사자였지요, 당사자. 그때 처음 공동 개최를 했었고 굉장히 부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해야 되는지가 가슴 아팠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정부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제시했었지요, 체육지원 상무팀 그다음에 실업팀 창단 여러 가지로. 그것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단일팀을 이루었고.

강원도 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협력 이런 것들 너무 좋지요, 취지도 좋고요. 다만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 계층부터 먼저 따져보고 가야 되거든요. 과연 단일화했을 때 종목은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양보할 것인지, 어느 종목에서 단일화할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 축구 결의안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축구 결의안이 들어가는 순간 외부의 청소년올림픽, 그것도 16세 이하입니다. 16세 이하 선수는 그러면 또다시 나는 못 나가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불안해 있어요. 이것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4년 1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면 국회에서 강행처리 촉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체육회하고 협업을 통하고 IOC를 통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예지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모스크바올림픽 단독 올림픽이었잖아

요. 차관님께서는 그때 모스크바올림픽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때는 불참을 했었지요, 서방이.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모스크바올림픽이 있었고 미국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LA올림픽……

○소위원장 김윤덕 소위 말하면 동서 이념 대결 구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완전히 폐쇄적이고 독재 국가가 하는 올림픽 못 가겠다 그다음에 소련에서는 너네 서방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참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반성하면서 이념을 떠나서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간에 스포츠만큼은 공동으로 치르는 게 결국은 전 세계 인류 평화에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진영 간의 대립보다는 스포츠의 화합을 더 강조하는 정신이 올림픽정신으로 된 거지요.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정부 측 의견이 현재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 대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 공동올림픽, 평화올림픽은 어떻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건 상당히 구시대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스포츠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글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뭔가가 가능성이 있어야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가요, 결론은? 하고 싶은데 별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가 핵심인가요? 아니면 정부는 현재 북한이 미사일 쏘아 대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 평화올림픽 한다고 뭔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당히 안보정신을 강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용 위원님 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용 위원님은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만 남북 평화올림픽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건 바람직

하지만 이게 선수단 구성 과정에서 실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1년 정도 남았는데 뭔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분들의 에너지를 또 여러 가지를 약화시키거나 또 다른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내지는 좀 비켜갔으면 하는 바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의견이고 저는 정부 측 의견이 마치 남북 대결에서 미사일 쏘아 대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옹호하는 듯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부안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정부는 정부나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스포츠를 활용해서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사일이 육십 차례 왔다 갔다 한다는데 문화예술, 스포츠만이 남북관계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일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창, 이명박 정부 때였지요. 이 개최지를 가져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그 안에도 남북 공동 개최 노력한 다부터 시작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환호했었지요.

저는 스포츠, 문화예술이 이용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담 아닌 담이 세워졌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딱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님 말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님 또한 이것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야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한체육회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공동 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안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막혀 있는 남북교류 관계를 스포츠를 통해서 만드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문화예술, 스포츠가 조금이나마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여야 정쟁을 떠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용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이용 위원 남북 화합 그다음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낳는 것들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스포츠만큼, 문화예술만큼 좋은 교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라면, 시작 단계라면 해야지요, 모르니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좀 묻고 싶어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라는 생각들.

결으로는 남북 화합, 남북 교류, 남북 체육 교류라고 하지만 밑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생 한 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북한한테 양보해서 단일팀으로 나간다는 것들 또 그때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들, 그 학생들, 그 선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IOC, 체육회 그다음에 각 종목별 경기단체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고 최종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축구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결의안을 시작함으로써 각종 경기단체들 그다음에 체육회, IOC는 혼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그다음에 남북의 어떤 정책 화합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윤덕 예,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 이것은 정부 측에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 공동 개최 참여 제안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답변 받으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제안이 갔다

고 하는 것은, 그런 적이 없는……

○김예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를 통해서 제안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어떤 예로 했는지.

○김예지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 교류, 체육 교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 자체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체육을 통한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편적인 것만 보기보다는, 북한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촉구하는 것은 그다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예지 위원 예.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세 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어떤 정치적, 정책적 결정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평가하지 않으면 양지만을 보고 음지가 죽어 나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지를 너무 배려하다 보면 전향적으로 결정을 막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남북 공동 단일팀 구성도 그런 양지의 영역이 있고 음지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수준을 좀 낮춰서라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촉구하는 약간 낮은 수준의 결의안 정도로 해서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화해를 하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는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그게 너무 상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좀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김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르익은 상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

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건가요?

○김예지 위원 반대가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2020년도에 북한에 보낸 제안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이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거나 약간의 긍정 표현이라도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국회 차원에서 축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이슈들도 있고 유엔에서 제재받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북한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라든가, 어느 정도 의사 표명이라도 했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예지 위원님 보좌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문체부에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아까 미진하게 처리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를 못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넘어가서 논의하고 의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맞지요?

나머지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정리한 대로 다 정리가 되었는데 경기단체에 대한체육회가 들어가는가, 마는가에 대한 입장만 정리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체육국장입니다.

저희가 현행법을 다 확인해 보니까 대한체육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 30조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법에 있는데요. 그것을 받은 시행령 37조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앞으로 스포츠포토에 참여하려고 하는 프로팀으로 전환하는 핸드볼팀이 있습니다. 핸드볼팀이 프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리그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인가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핸드볼협회가 있는데 프로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는 일단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경기단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한핸드볼협회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프로경기단체가 되면 프로경기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겠지요. 대한체육회……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핸드볼은 프로연합회가 따로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상 핸드볼협회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지금 여자팀만 프로로 전환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인가 프로화를 한대요. 이게 프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포츠포토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핸드볼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곳은 대한체육회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프로농구, 프로배구, 축구 다 프로연합이 있지요. 프로팀이 딱 따로 있잖아요, 협회가. 그런 것처럼 분리가 된다면 괜찮은데, 핸드볼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인데 프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리그만. 전국체전에 참여하면서 프로리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포토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6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볼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행법상 그것이 프로로 전환이 되더라도 핸드볼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종목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 대상 종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도 해당 중

목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관련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임오경 위원 국장님, 프로를 스포츠토트에 가입시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스포츠토트에 가입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몇 종목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최보근 그것은 다른 종목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을 새로운 종목으로 넣을지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을 만약에 스포츠토트에 가입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프로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프로로 딱 한정되어 있다면 간단한데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종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핸드볼이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이용 위원 그때 보시지요. 들어갈 때 한번 보시지요.

○임오경 위원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에서 빠자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현재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고 논리적으로도 대한체육……

○임오경 위원 현행법상 안 넣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쟁점이 해소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3항, 5항, 6항 있는데요. 3항, 5항, 6항의 수정 의결을 위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내용을 쪽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9쪽,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국민체육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다음에 5항요.

○전문위원 박희석 15쪽입니다.

김승수·임오경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쪽에서 24쪽에 있는 수

정의건(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요, 그 안이 두 의원님의 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한체육회장이 부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수정의견(안)대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특별한 이견이 없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5항, 6항이 같이 들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된 거지요?

그다음에 제4항, 7항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5항 및 제6항,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7항,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 문제는 정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아까 논의하다가 연기한 축구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 중 두 분은, 지금 김예지 위원님께서 축구 결의안을 일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시라고 해서 약간 이 내용을 조정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제가 오늘 의견 분포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계류하시고 나중에……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그 상황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 통해서 북한에 제안했던 내용 그것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윤덕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용만 제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예 지 김 윤 덕 이 용 임 오 경
임 종 성 전 재 수

○청가 위원(1인)

배 현 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 문 위 원 박 회 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조 용 만

체 육 국 장 최 보 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용 호 성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 서 중